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2486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상

피고B

변론 종결 2021. 1. 21.

판결 선고 2021. 2. 4.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2020. 2. 1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20. 접수 제4172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돈을 대여하기로 하고 2017. 1. 17. C과 대여금 2,600만 원, 변제기 2017. 2. 28.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작성 제38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와 C은 부부 사이로, 2012.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E은 2016.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과 피고는 2018. 8. 31.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2. 10. 신탁을 원인으로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2. 14. 증여를 원인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2. 20. 접수 제417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아왔는데, C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대여금 채권을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C 사이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C은 2017. 3. 8. 원고에게 2,65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	2016.11. 2.	A		1,100,000	을제3호증(G 통장)
2	2016.11.10.	A		7,000,000	을제3호증(G 통장)
3	2016.11.12.	C	4,000,000		을제3호증(G 통장)
4	2016.11.15.	C	1,400,000		을제3호증(G 통장)

1	2016.11. 2.	A		1,100,000	을제3호증(G 통장)
5	2016.11.23.	C	500,000		을제3호증(G 통장)
6	2016.11.28.	C	500,000		을제3호증(아파트종합통장)
7	2016.11~12	C	8,610,000		을제4호증(원고가 C의 H은행 캐쉬카드로 직접 출금하여 수령한 내역)
8	2017. 1.17.	A		10,000,000	을제3호증(G 통장)
9	2017. 1.17.	A		6,000,000	을제3호증(G 통장)
10	2017. 2. 7.	A		13,500,000	을제3호증(G 통장)
11	2017. 3. 8	C	26,500,000		을제3호증(G 통장)
12	2017. 3. 8	C	19,500,000		을제3호증(G 통장)
13	2017. 3. 8	C	1,050,000		을제3호증(G 통장)
14	2017. 3.31.	A		17,700,000	을제3호증(G 통장)
15	2017. 4.28.	C	10,000,000		갑제9호증의 2(본인금융거래)
16	2017. 5.	C	10,000,000		을제3호증(G 통장)
17	2017. 5.26.	C	5,000,000		을제3호증(G 통장)
18	2020. 6.12	A		500,000	사해행위 이후 발생한 채권으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합계	82,060,000	55,300,000	다툼 없는 사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C 사이 금전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데, C이 2017. 3. 8. 원고에게 지급한 2,650만 원은 같은 날 지급한 1,950만 원, 105만 원과 함께 2017. 2. 15.차차용금 4,6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1	2016. 11. 02.		1,100,000	갑 제9호증의 1 은행거래내역
2	2016. 11. 10.		7,000,000	갑 제9호증의 1
3	2016. 11. 12.	4,000,000		갑 제9호증의 2 은행거래내역
4	2016. 11. 15.	1,400,000		갑 제9호증의 2
5	2016. 11. 23.	500,000		갑 제9호증의 2
6	2016. 11. 28.	500,000		갑 제9호증의 2
7	2017. 01. 17.		10,000,000	갑 제9호증의 1
8	2017. 01. 17.		6,000,000	갑 제9호증의 2
9	2017. 02. 07.		13,500,000	갑 제9호증의 2
10	2017. 02. 15.		46,000,000	현금거래 갑 제10호증 녹취록

1	2016. 11. 02.		1,100,000	갑 제9호증의 1 은행거래내역
11	2017. 03. 08.	26,500,000		갑 제9호증의 2
12	2017. 03. 08.	19,500,000		갑 제9호증의 2
13	2017. 03. 08.	1,050,000		갑 제9호증의 2
14	2017. 03. 31.		17,700,000	갑 제9호증의 2
15	2017. 04. 28.	10,000,000		갑 제9호증의 2
16	2017. 05. 경	10,000,000		현금거래
17	2017. 05. 01.		4,800,000	현금거래
18	2017. 05. 26.	5,000,000		갑 제9호증의 2
19	2020. 06. 12.		500,000	갑 제9호증의 2
합계	78,450,000	106,600,000		

도표설명 : 위 도표 중에서 굵은 테두리로 강조된 부분(순번 10, 14, 16, 17, 19번 거래)이 피고 주장에서 누락된 거래내역입니다.

나. 판단

1) C이 원고에게 2016. 11. 12.부터 2016. 11. 28.까지 지급한 640만 원(= 400만 원 + 140만 원 + 50만 원 + 50만 원)은 원고가 2016. 11. 2. 및 같은 달 10. 대여하여 준 810만 원(= 110만 원 + 7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고, C이 원고에게 2017. 4. 28. 및 2017. 5. 경 지급한 2,000만 원은 원고가 2017. 3. 31. 대여하여 준 1,77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C이 2017. 5. 26. 원고에게 지급한 500만 원에 관하여 원고는 2017. 5. 1. 자 대여금 480만 원에 대한 변제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2017. 3. 31. 자 대여금 1,77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가 C에게 2017. 2. 15. 4,6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지와 C이 원고에게 2017. 3. 8. 지급한 4,705만 원(= 2,650만 원 + 1,950만 원 + 105만 원)이 어떤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인지가 문제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2)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3, 9, 10,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에게 2017. 2. 15.

4,6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이 피고에게 2017. 3. 8. 지급한 4,705만 원은 위 4,6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가) C과 원고가 2020. 5. 21.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그때 현금으로 얼마 드렸죠?

4,600이었나?"라고 묻자 C은 "4,600이었지."라고 대답하였고, 원고가 "105만원 더 받았어요."라고 말하자 C은 "용돈 쓰라고."라고 대답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8.경부터 2020. 3.경까지 C에게 "전화 달라", "다는 아니어도 일단 2,000만 원만 하라", "연락 기다리고 있다", "C 대표자님 6월 30일(2018년) 상환 예정기일", "피하지 말고 연락 달라", "오늘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도대체 입금처리 언제 되는 겁니까", "C 대표자님 6월 30일 상환예정기준 연체 중입니다. (2018년) 3월 10일 연체 지연손해금 포함 48,435,000", "약속 지켜달라"라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이에 대하여 C은 원고에게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전화드릴게요", "ㅇㅋ",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장을 보냈을 뿐, 대여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거나 변제할 돈이 남아 있지 않다는 등의 취지로 답변하지 않았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C은 이미 2017. 12. 8.경 원고에 대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원고의 변제 독촉에 대하여 차용금의 존재나 액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는 원고가 2017. 1. 17. C에게 지급한 1,600만 원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정한 원금 2,600만 원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1,000만 원(실제 대여금인 1,600만 원의 약 62% 상당액)을 공제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2016. 11.경 원고로부터 대여한 810만 원 중 2016. 11. 12.부터 같은 달 28.까지 원고에게 합계 640만 원만 변제하였는바¹⁾ 원고가 C에 대하여 대여금의 62% 상당액을 선이자로 공제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C이 원고에게 위 대여일로부터 2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7. 3. 8. 선이자를 포함한 2,600만 원 전액을 변제하면서 1개월분 이자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7. 2. 7. C에게 지급한 1,350만 원은 2,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650만 원을 공제하고 입금하여 준 돈이고, C이 2017. 3. 8. 원고에게 지급한

2,055만 원(= 1,950만 원 + 105만 원)은 위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1달분 이자 55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개월 동안 돈을 빌리면서 실제 대여금인 1,350만 원의 약 48% 상당액을 선이자 및 수수료로 공제하였다고 하면서도, 1달 만에 전액을 변제하면서 다시 5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것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3.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가. 앞서 본 증거들 및 갑 제1, 4, 13호증을 제8, 9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이하 'H은행'이라 한다) 업무지원센터장, J원장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일인 2020. 2. 14. 기준 C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6억 4,5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16억 8,000만 원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000만 원(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과 3억 6,000만 원(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을 공제한 12억 9,000만 원의 1/2 상당액]

②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 35,000주: 3억 5,000만 원(액면가인 주당 10,000원으로 인정한다)

③ H은행 예금 잔액: 136,195원(= 100,134원 + 505원 + 35,556원)

합계: 995,136,195원

2) 소극재산(H은행에 대한 담보대출채무 18,991,000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였다)

① 원고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채권: 45,624,657원 [원금 2,600만 원 + 2017. 2. 8.부터 2020. 2. 14.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19,624,657원(= 2,600만원 × 25% × (3 + 7/365))]

② M조합에 대한 보증채무: 265,687,000원

③ N회사에 대한 보증채무: 98,091,000원

④ H은행에 대한 연체 채무: 9,926,000원(= 3,693,000원 + 6,233,000원)

⑤ H은행에 대한 채무: 21,074,000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20. 4. 10. 모두 변제되었다)

⑥ H은행 신용카드대금 채무: 215,000원

합계: 440,617,657원

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된 6억 4,500만 원을 감소되었고, 그로 인하여 C의 소극재산 합계액(440,617,657원)이 남은 적극재산 합계액(350,136,195원)을 초과하게 되었으므로(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변제된 H은행에 대한 21,074,000원의 채무를 공제하여 보더라도 소극재산 합계액은 적극재산 합계액을 초과한다), 이 사건 증여행위로 인하여 C의 무자력이 초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과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L은 재무상태가 좋은 회사로 거래처들에 대해 921,600,000원 상당의 공사 미수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L의 대표자인 C 역시 미수금 및 대여금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C이 무자력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L은 C과 법인격을 달리하는 주식회사이므로 L의 재무상태가 C의 무자력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설령 L이 공사 미수금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해당 채권액을 C의 적극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상회복의 방법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반호림

별지

1) 피고는 2016. 11.경 1,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690만 원을 공제하였고 위 640만 원

외에도 원고가 C의 주식회사 H의 현금카드로 861만 원을 출금함으로써 위 1,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C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